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53
----------	-----

2017. 1. 19.(목)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장선배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7년 1월 6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1월 10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1월 19일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장선배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종류, 수량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경형)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전국 최고 수준인 충북도내 미세먼지 농도는 각종 호흡기 질환 및 환경적 피해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어,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사항을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과 세부 사항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검토한 바, 도내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라 한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발굴과 제도화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관련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전기자동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포함한 충전시설 보급 계획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충전시설 설치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7조(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충전시설 설치 수량 등) ① 제6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②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9조(설치대상 외의 시설)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대상의 적용례) 제6조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 신고를 하는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는 시설,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지역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車種) 및 차종별 보급 물량
3.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본조신설 2016.6.30.]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직류 100볼트 이상 450볼트 이하 또는 교류 380볼트를 가변적으로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교류 220볼트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

②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6.6.30.]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2016.1.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이하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10.3.2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1.3.15., 2012.6.29., 2013.5.31., 2014.10.28., 2016.6.8., 2016.8.1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가. 특별시	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라. 그 밖의 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삭제 <2013.5.3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8.>

③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④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8.27., 2005.6.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8.8.27., 2008.2.29., 2013.3.23.>

⑥ 삭제 <2010.7.6.>

⑦ 삭제 <2010.7.6.>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1.5., 2014.4.29., 2015.12.28.>

비 용 추 계 서

1. 사업목적

-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재원지원 사항을 추계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에 재원 조달 및 재원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소요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5조(예산지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나. 추계의 전제

-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다. 추계결과 : '17년부터 향후 5년간 총 4,666.3백만원

라. 재원조달방안(도비)

- 천연가스버스자동차(CNG) : 1대당 1.8백만원
- 천연가스청소자동차 : 1대당 4.1백만원
- 전기자동차 : 1대당 4백만원(정액지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사 업 비	합계	4,566.3	501.3	710.5	931.0	1,151.5	1,372.0
	도비	4,666.3	501.3	710.5	931.0	1,151.5	1,372.0
	시·군비						
예상 댓수		1,289	139	205	260	315	370

6. 작성자 : 환경정책과장 한경수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501.3	710.5	931.0	1,151.5	1,372.0	4,666.3
보 조 금		501.3	710.5	931.0	1,151.5	1,372.0	4,666.3
재원 조달		501.3	710.5	931.0	1,151.5	1,372.0	4,666.3
의존 재원	소 계	501.3	710.5	931.0	1,151.5	1,372.0	4,666.3
	지방보조금	501.3	710.5	931.0	1,151.5	1,372.0	4,666.3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민간 자부담)							

< 항목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까지	향후계획						비 고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사업량 (대)	709	1,289	139	205	260	315	370	
	예산 (도비)	1,375.7	4,666.3	501.3	710.5	931.0	1,151.5	1,372.0	
천연 가스 버스 자동차 보급 사업	사업량 (대)	630	225	25	50	50	50	50	
	예산 (도비)	1,238	405	45	90	90	90	90	
천연 가스 청소 자동차 보급 사업	사업량 (대)	34	53	3	5	10	15	20	
	예산 (도비)	137.7	217.3	12.3	20.5	41.0	61.5	82.0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사업량 (대)	45	1,011	111	150	200	250	300	
	예산 (도비)	0	4,044	444	600	800	1,000	1,200	